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이 순 래*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범죄와 소년사건처리의 현황을 분석하여 소년사법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수는 감소하고 소년범죄율도 줄어드는 경향이다. 소년사건의 처리현황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검사의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63% 가량이 법원소년부나 형사법원에 송치되지 않았다. 둘째, 전환처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선도유예되는 비율이 6%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의 소년만 전환처우되었다. 셋째, 우범소년이 방치되었다. 연간 1-2명 내지는 전무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실시되지 않았다. 넷째, 보호처분의 다양성이 미흡하였다. 5호 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4호 처분은 2% 내외에 불과할 뿐이었고 8% 내외만이 소년원의 수용처분을 받았다. 다섯째, 형사법원의 역송비율이 높았다. 35% 내외의 소년형사사건이 법원소년부로 송치될 정도로 역송비율이 높았다. 여섯째,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았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되는 비율은 최근에 30% 가량을 차지하였다. 끝으로, 벌금형의 증가추세이다. 벌금형은 최근에 증가하여 소년형사사건의 10% 가량에 선고되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시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높은 불기소율, 전환처우의 낮은 활용도, 우범소년의 낮은 송치율, 형사법원의 높은 역송율과 집행유예율, 벌금형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외국에서 새로운 소년범죄 대응전략으로 활용되는 균형사법이념, 결합판결, 회복적사법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다.

※ 본 연구는 200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다행스럽게 안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의 규모는 1997년에 164,182명을 정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최근 2005년에는 86,014명으로 그동안 거의 과반수가 감소하였다. 소년범죄의 감소현상은 흔히 거론되듯이 청소년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해서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의 수를 산출하여도 1997년에는 청소년 10만명당 2,643명이 소년범죄자였지만 2005년에는 1,656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의 질적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강도나 폭행 등의 폭력성 범죄가 일반적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절도와 사기 등이 다수를 차지하여 소년범죄의 유형도 점차 비폭력화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최근의 소년범죄는 전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양적으로 감소하며 질적으로는 비폭력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에 우려스러운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¹⁾ 과거에 소년범죄는 일회성으로,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부분 한두 번에 그치고 곧 정상적 소년생활로 회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전체 소년범죄자 중에서 일회성 범죄에 그치는 소년이 80%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회 이상의 과거범죄가 있었던 재범소년은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범소년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소년범죄자의 40%, 2005년에는 38%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소년범죄의 재범비율이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간 현행의 소년사법체계가 소년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거듭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는 소년법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 4월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동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년법 개정시안(이후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²⁾. 개정시안은 재범방지 기능의 강화와 함께 1988년 소년법이 개정된 이래 소년사법체계의 운영과정

1)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p.270.

2) 법무부 보호과, 2007, 소년법 개정계획

에서 제기된 문제점³⁾들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 우선, 소년법의 적용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두 번째, 우범소년이 방치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현행의 우범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우범사유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벽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음주소란 또는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소년비행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보호관찰과 병합되었지만 개정시안에서는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을 도입하여 1월 이내에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처분을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네 번째, 소년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선보조인 제도와 화해조정절차를 도입하였으며 피해자진술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다섯째,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사건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사결정전 조사제도가 새로이 신설되었다. 여섯째, 검사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법에 근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선도, 청소년 상담시설의 상담과 교육, 소년원 특별교육, 범죄예방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법제화하였다.

2007년의 개정시안은 심각한 수준의 소년재범현상에 대처하고 교화와 선도 중심의 소년사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른 나이에 성장하는 것을 반영하여 소년법의 적용대상 연령을 조정하고, 충격구

3) 원혜옥, 1999,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형사정책 제11호, p.355; 전지연, 2004, “경찰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한국형사정책학회와 청소년단체협의회 세미나 원고, p.9; 오영근 · 최병각, 1995,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p.84; 김지선, 2003,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p.143; 윤용규 · 최종식, 2000, “우리나라 소년사범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p.63; 임상규, 2002,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7권, p.237.

금의 도입으로 장기간의 소년원수용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집중적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범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방치되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상습적 소년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 등은 소년재범현상에 대한 유용한 대처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잠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시안은 새로운 제도적 형태를 도입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소년사법체계의 실제 운용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는 충분한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우범소년의 경우에 현행 소년법에서도 비행성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소년경찰이 법원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였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데 우범사유를 구체화하였다고 소년경찰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송치하여 개정시안이 의도하는 비행방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사법체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서는 소년범죄의 주요 발생양태와 사건처리과정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새로운 소년사법대책으로 대두하는 균형사법제도(balanced justice), 회복적 사법제도(restorative justice), 결합판결(blended sentencing), 전환처우(diversion)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소년범죄의 발생양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표 1>참조) 우리나라 소년범죄는 1997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자는 1997년에 164,182명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았으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86,014명으로 감소하여 1997년에 비해 50%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체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에는 7.8%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3.6%로 감소하였다.

소년범죄자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소년범죄문제가 완화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소년범죄자의 수는 인구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년인구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12-19세의 청소년 인구는 1996년에 약 630만 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519만 명으로 감소하여 10년 동안에 20% 가량이 줄었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감소추세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표 1>에서 소년범죄율은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소년범죄율의 경우도 최근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년범죄율은 199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 2522.2명, 2002년에는 2348.8명, 2003년에 2017.9명, 2004년에 1,804.4명, 2005년에 1,655.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소년범죄문제는 최근에 들면서 안정화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는 1998년 이후로 감소하고 소년범죄율도 2001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소년범죄문제가 안정화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이에 만족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2005년의 소년범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치이다. 현재의 안정화추세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죄자의 재활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표 2> 참조), 2003년 이후로 획기적 반전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폭력범이었다. 1996년에 폭력범의 비율이 36.2%, 재산범이 23.2%, 강력범이 3.0%, 교통사범이 26.8%, 기타가 10.8%와 같이 지금까지 소년범죄의 유형 중에서 폭력범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1996년 이후에도 폭력범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폭력성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 획기적 반전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2003년의 경우에 재산범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고 폭력범(30.0%), 교통사범(25.0%), 강력범(2.5%)의 순이다.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도 재산범의 비율은 34.9%와 37.8%인 반면에 폭력범은 32.2%와 32.1%로 폭력범에 비해 재산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폭력범이 30%를 상회하여 소년범죄의 폭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소년범죄에 관한 통계자료가 보존된 이래로 폭력범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소년범죄가 점차 비폭력화 되어가는 긍정적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폭력범에서처럼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의 경우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1996년에서 1999년까지 강력범의 비율은 3.0% 이상이였지만 2002년에 2.1%, 2005년 2.6%로 줄어들어 강력범의 경우도 최근에 들어 낮아지는 경향이다.

<표 1> 소년범죄 발생현황

구 분 연 도	총범죄	소년범죄	소년인구 (12-19세)	구성비	소년범죄율 (10만명당)
1996	2,018,296	146,986	6,296,918	7.3	2334.3
1997	2,117,759	164,182	6,211,001	7.8	2643.4
1998	2,341,431	161,277	6,093,609	6.9	2646.7
1999	2,400,485	150,821	5,924,716	6.3	2545.6
2000	2,329,134	151,176	5,711,899	6.5	2646.7
2001	2,426,050	138,030	5,472,564	5.7	2522.2
2002	2,416,711	123,921	5,275,981	8.1	2348.8
2003	2,441,267	104,158	5,161,636	4.3	2017.9
2004	2,606,718	92,976	5,152,787	3.6	1804.4
2005	2,384,613	86,014	5,194,546	3.6	1655.9

자료: 청소년백서(재구성)

폭력범과 강력범이 감소하는 반면에 재산범의 비율은 2001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에 재산범의 비율은 24.5%이었으나, 2002년에는 30.8%, 2003년에는 34.5%, 2004년에 34.9%, 2005년에 37.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범을 범죄명으로 세분화했을 때에 최근에 들어 절도범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도범죄는 2001년

에는 18.8%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해 늘어나 2005년에는 전체 소년범죄의 30.3%를 차지한다.

<표 2>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구 분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46,986 (100)	164,182 (100)	161,277 (100)	150,821 (100)	151,176 (100)	138,030 (100)	123,921 (100)	104,158 (100)	92,976 (100)	86,014 (100)
강 력 범	소 계	4,566 (3.0)	5,653 (3.4)	6,134 (3.8)	5,053 (3.4)	4,421 (2.9)	3,479 (2.5)	2,699 (2.1)	2,868 (2.8)	2,877 (3.1)	2,273 (2.6)
	살 인	69 (0.0)	79 (0.0)	65 (0.0)	71 (0.0)	45 (0.0)	49 (0.0)	60 (0.0)	19 (0.0)	25 (0.0)	35 (0.0)
	강 도	2,840 (1.9)	3,651 (2.2)	4,273 (2.6)	3,102 (2.2)	2,691 (1.8)	1,885 (1.4)	1,375 (1.1)	1,550 (1.5)	1,218 (1.3)	826 (1.0)
	강 간	1,599 (1.1)	1,840 (1.1)	1,703 (1.1)	1,709 (1.1)	1,515 (1.0)	1,371 (1.0)	1,122 (0.9)	1,192 (1.2)	1,501 (1.6)	1,230 (1.4)
	방 화	58 (0.0)	83 (0.1)	93 (0.1)	171 (1.1)	170 (0.1)	174 (0.1)	142 (0.1)	107 (0.1)	133 (0.1)	182 (0.2)
폭 력 범	소 계	53,165 (36.2)	62,218 (37.9)	57,080 (35.4)	56,757 (37.6)	56,711 (37.5)	51,095 (37.1)	39,911 (32.1)	31,532 (30.3)	29,940 (32.2)	27,647 (32.1)
	폭행, 상해	52,359 (35.6)	61,383 (37.4)	56,461 (35.0)	56,186 (37.3)	56,125 (37.1)	50,598 (36.7)	39,465 (31.8)	31,199 (30.0)	29,561 (31.8)	27,187 (31.6)
	공 갈	769 (0.6)	790 (0.5)	557 (0.4)	517 (0.3)	488 (0.3)	420 (0.3)	386 (0.3)	272 (0.3)	327 (0.3)	387 (0.4)
	기 타	37 (0.0)	45 (0.0)	62 (0.0)	54 (0.0)	98 (0.1)	77 (0.1)	60 (0.0)	61 (0.0)	52 (0.0)	73 (0.1)
	소 계	34,044 (23.2)	39,605 (24.1)	45,561 (28.3)	36,612 (24.3)	39,834 (26.3)	33,822 (24.5)	37,981 (30.8)	36,049 (34.5)	32,487 (34.9)	32,472 (37.8)
재 산 범	절 도	29,936 (20.4)	35,177 (21.4)	39,894 (24.7)	31,162 (20.7)	34,236 (22.6)	25,926 (18.8)	26,484 (21.4)	24,208 (23.2)	24,215 (26.0)	26,053 (30.3)
	횡령, 배임	955 (0.7)	993 (0.6)	887 (0.5)	788 (0.5)	1,048 (0.7)	981 (0.7)	866 (0.7)	840 (0.8)	765 (0.8)	864 (1.0)
	장 물	757 (0.5)	741 (0.5)	819 (0.5)	731 (0.5)	555 (0.4)	343 (0.2)	308 (0.3)	246 (0.2)	283 (0.3)	352 (0.4)
	사 기	2,396 (1.6)	2,694 (1.6)	3,961 (2.6)	3,931 (2.6)	3,995 (2.6)	6,572 (4.8)	10,323 (8.4)	10,755 (10.3)	7,224 (7.8)	5,203 (6.0)
	교통사범	39,378 (26.8)	45,622 (27.8)	41,665 (25.8)	40,874 (27.1)	42,537 (28.2)	41,869 (30.3)	36,006 (29.1)	26,022 (25.0)	22,452 (24.1)	18,646 (21.7)
기 타		15,833 (10.8)	11,084 (6.8)	10,837 (6.7)	11,525 (7.6)	7,673 (5.1)	7,765 (5.6)	7,324 (5.9)	7,687 (7.4)	5,220 (5.6)	4,976 (5.8)

자료: 청소년백서(재구성)

더욱 두드러진 현상은 사기범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은 1997년 이전까지 소년범죄 중에서 2% 미만이었고 1998년, 1999년, 2000년까지만 하여도 2%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가하여 2001년에 4.8%, 2002년에 8.4%, 2003년에는 10.3%로 현저히 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감소하여 7.8%와 6.0%이지만 이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년범죄 중에서 사기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부정확한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년범죄 실무가들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광고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온라인입금하면 이를 찾아 쓰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식통계는 사기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만일 최근 증가하는 소년사기범죄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면 이러한 소년범죄는 앞으로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3>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연 도	계	초 범	전 과			
			1범	2범	3범	4범 이상
1996	133,198 (100)	96,851 (72.7)	19,643 (14.7)	8,508 (6.4)	4,207 (3.2)	3,989 (3.0)
1997	146,624 (100)	103,958 (70.9)	22,067 (15.1)	10,148 (6.9)	5,168 (3.5)	5,283 (3.6)
1998	145,174 (100)	96,407 (66.4)	23,305 (16.1)	11,538 (7.9)	6,356 (4.4)	7,568 (5.2)
1999	140,351 (100)	89,718 (63.9)	23,071 (16.4)	11,672 (8.3)	6,830 (4.9)	9,060 (6.5)
2000	140,893 (1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6,536 (4.5)	9,563 (7.0)
2001	128,430 (100)	80,942 (63.0)	20,942 (16.3)	10,342 (8.0)	6,218 (4.8)	9,986 (7.7)
2002	112,812 (100)	71,662 (63.5)	18,326 (16.2)	9,036 (8.2)	5,046 (4.5)	8,742 (7.7)
2003	94,038 (100)	61,025 (64.9)	14,751 (15.7)	7,263 (7.7)	4,106 (4.4)	6,893 (7.3)
2004	72,770 (100)	44,267 (60.8)	11,187 (15.4)	5,227 (7.2)	3,138 (4.3)	8,951 (12.3)
2005	67,478 (100)	42,017 (62.3)	9,307 (13.8)	4,601 (6.8)	2,672 (4.0)	8,881 (13.2)

자료 : 범죄백서 (재구성)

소년범죄의 규모가 감소하고 비폭력화 되는 경향은 바람직한 경향이다. 그러나 소년의 재범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소년범죄를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하였을 때에(<표 3> 참조) 재범이상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 1990년 초기만 하여도 소년범죄에서 재범 이상의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하였다. 1996년의 경우에도 초범의 비율은 72.7%이고 재범 이상의 비율은 27.3%이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 증가해 1997년에 29.1%, 1998년에 33.6%로 증가하고 1999년 이후로는 35% 내외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경우에 재범이상의 비율은 39.2%와 37.7%로 나타나 소년범죄를 저지른 10명 중에서 4명가량이 과거에 한번 이상 경찰을 비롯한 소년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소년들이다. 만일 소년사법기관이 이들에 대해 적절한 선도와 재활을 했더라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높은 재범비율은 소년사법기관이 소년범죄자를 처리하고 이들의 선도와 재활을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사회일반에서도 소년범죄자의 사회재적응을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소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범 이상의 소년을 전과회수로 세분화하면 소년범죄의 상습화현상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1996년의 경우에 과거 범죄경력이 한번이었던 1범의 비율은 14.7%이었고, 2범은 6.4%, 3범은 3.2%, 4범 이상은 3.0%이었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에 1범의 비율은 13.8%, 2범은 6.8%, 3범은 4.0%, 4범 이상은 13.2% 등으로 4범 이상의 만성범죄자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1996년에 3.0%에 불과하던 4범 이상의 비율이 2005년에는 13.2%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소년의 재범현상은 전체 소년범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범 이상의 비율이 불과 10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었을 정도로 소년범죄의 상습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소년범죄자의 처리실태

현행의 소년법은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하고

해당소년별로 서로 다른 사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을 검거하면 경찰이 직접 법원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의 경우는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1) 경찰이 송치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이 없을 경우에는 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소추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2) 다음으로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3)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년법원으로 송치한다. 4)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인 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5) 소추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범죄소년을 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에 따라 소정의 조사와 심리를 받는다. 법원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리불개시 또는 심리개시결정을 한다. 사안이 경미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의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심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년과 보호자에게 심판사유와 보조인 선임권을 통지해야 하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직권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때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조사관과 보호자 및 보조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은 허용되지만 검사는 관여할 수 없다. 심리결과 법원소년부는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1호 보호처분에서 제7호 보호처분을 한다.⁴⁾

4) 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04, 형사정책 제7판, p.468.

소년범죄자의 처리과정 중에서 <표 4>는 검사의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불기소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5년의 경우에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타 등의 사유로 불기소한 사례가 53,876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자 85,887명의 62.7%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범죄혐의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한 사례는 3,233명(3.8%)이며 기소중지한 사례가 2,310명(2.7%)이고 소추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한 사례가 41,059명(47.7%) 등이다. 흔히 소년범죄자는 청소년기 특유의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탈에 빠지는 청소년기 한정범죄소년(adolescence-limited delinquents)과 범죄성벽이 개인의 기본성향으로 고착되어 어려서부터 일탈을 저지르고 나이가 들어서도 범죄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는 생애지속 범죄소년(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으로 구분된다.⁵⁾ 소년범죄자 중에서 한정범죄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⁶⁾ 검사의 높은 불기소율은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지속 범죄소년이 불기소되었을 때는 특별한 조치없이 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기소 대상자를 판별하는데 있어 보다 세심한 진단과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공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형사법원에 송치하는 구공판율은 1996년에는 13.3%이었으나 2005년에는 5.0%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이다. 같은 연도에 미국에서 소년범죄자가 성인법원으로 이송된(transfer) 비율은 7% 가량⁷⁾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4.5%⁸⁾이었다. 그간

5) 이순래·박철현, 2000,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호, p.96-102.

6) Moffitt, T.E., 1993,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p.674-701. 국내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속비행소년은 조사대상자 전체의 6% 가량에 불과하였다(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p.287). 그리고 소수의 지속비행소년은 조사대상자 전체가 저지른 폭력비행의 72.4%, 재산비행의 77.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범죄성 비행이 이들 지속비행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Ulmer, Jeffery T., 2007, Juvenile offenders in the U.S.: Transfer to adult court versus diversion ou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대한범죄학회 국제세미나 자료집, p.38.

8) Kenji, Hirose, 2007, 일본의 소년법제-비형벌적 처분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국제세미나 자료집, p.128.

소년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에 의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므로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보다는 범죄사실의 경중이 중심이 되고 소년범죄자의 선도보다는 처벌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검사는 모든 소년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소년부가 선의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⁹⁾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공판율이 5.0%이며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성인법원 이송율이 7% 가량과 4.5% 등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이 소년범죄자를 처벌위주로 처리하고 있다.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법원선의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소년범죄자를 처벌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형태(institutional form)가 핵심적 요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소년사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지향과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법원소년부 송치는 증가추세이다. 1996년까지만 하여도 법원소년부 송치는 10% 수준에 불과하고 반면에 구공판율이 13.3%를 차지하여 검사의 선의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법원소년부 송치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9.6%에 이르러 10년 동안에 2배가량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검사의 선의권이 점차 소년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는 소년법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키고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나(법무부훈령 제88호) 보호관찰소에 선도를 위탁하는(법무부훈령 제365호) 제도이다. 선도유예는 광주지검이 1978년 4월부터 시작하여 그 결과 효과가 입증되어 198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선도유예는 소년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검찰의 처리단계에서 종료하고 대신에 민간 범죄예방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선도라는 처우를 활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환처우(diversion)이다.¹⁰⁾

9) 오영근·최병각, 전계서, p.84; 김지선, 전계서, p.143.

10) 이순래, 2002, “소년전환처우(Juvenile Diversion)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법연구 창간호, p.287.; 선도유예 이외에 우리나라 전환처우로는 경찰단계에서 1991년부터

<표 4> 소년범죄 처리 현황

연 도	계	기 소			불기소					소년부 송 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 소 유 예	기 소 중 지	기 타	
1996	146,722 (100)	52,003 (35.4)	19,569 (13.3)	32,434 (22.1)	78,696 (53.7)	2,666 (1.8)	62,114 (42.3)	4,897 (3.3)	9,019 (6.2)	16,023 (10.9)
1997	163,813 (100)	60,301 (36.8)	23,030 (14.1)	37,271 (22.8)	78,596 (47.9)	3,052 (1.9)	62,447 (38.1)	5,437 (3.3)	7,660 (4.7)	24,916 (15.2)
1998	163,583 (100)	57,490 (35.1)	22,229 (13.6)	35,261 (21.6)	83,166 (50.8)	3,407 (2.1)	64,063 (39.2)	5,543 (3.4)	10,153 (6.2)	22,927 (14.0)
1999	153,578 (100)	50,733 (33.0)	16,368 (10.6)	34,365 (22.4)	78,745 (51.3)	3,809 (2.5)	59,540 (38.8)	4,848 (3.1)	10,548 (6.9)	24,100 (15.7)
2000	153,085 (100)	45,922 (30.0)	13,312 (8.7)	32,610 (21.3)	81,625 (53.3)	3,850 (2.5)	63,122 (41.2)	3,786 (2.5)	10,867 (7.1)	25,538 (16.7)
2001	138,166 (100)	44,578 (32.3)	10,364 (7.5)	34,214 (24.8)	71,611 (51.8)	4,178 (3.0)	54,384 (39.4)	3,934 (2.8)	9,115 (6.6)	21,977 (15.9)
2002	124,076 (100)	37,192 (30.0)	8,450 (6.8)	28,742 (23.2)	67,110 (54.1)	4,421 (3.6)	48,155 (38.8)	4,649 (3.7)	9,885 (8.0)	19,774 (15.9)
2003	104,325 (100)	25,428 (24.4)	6,500 (6.2)	18,928 (18.2)	59,414 (57.0)	3,898 (3.7)	43,207 (41.4)	5,325 (5.1)	6,984 (6.8)	19,483 (18.6)
2004	93,060 (100)	21,125 (22.7)	5,473 (5.9)	15,652 (16.8)	55,715 (59.9)	3,503 (3.8)	41,619 (44.7)	3,179 (3.4)	7,454 (8.0)	16,160 (17.4)
2005	85,887 (100)	15,197 (17.7)	4,252 (5.0)	10,945 (12.7)	53,876 (62.7)	3,233 (3.8)	41,059 (47.7)	2,310 (2.7)	7,274 (8.5)	16,814 (19.6)

자료 : 청소년백서(재구성)

<표 5>는 선도유예의 실시현황이다. 선도유예는 오랜 시행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활용실적을 보면 5,511명만이 선도유예되어 전체 소년범죄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의 활용실적은 오히려 1990년도 초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1994년과 1995년에 선도유예된 비율은 10% 내외이었고 이후 감소하여 1996년에는 7.5% 수준이었다. 선도유예된 비율은 계속 감소해 2001년에는 전체 소년범죄자의 4.6%에 불과하다. 2001년 이후로 활용도는 5.2%(2002년), 5.9%(2003년), 5.4%(2004년), 6.4%(2005년) 등으로 조금씩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과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소년법 수사 전문가 참여제'등이 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990년도 초반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환처우는 사법절차를 조기에 종료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년의 개인적 필요에 적합한 선도와 처우를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법절차에 부수되는 기본권의 제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인간적으로 소년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Haley의 연구(1996: 365)에서와 같이 전환처우는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Haley는 재범현상에 관한 기존문헌들을 검토하고 재범률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성이 찾아보았다. 그 결과 재범률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조기에 전환처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반대로 사법절차에 따라 교정처우를 받았던 사람들은 조기에 전환처우되었던 대상자들에 비해 월등히 재범률이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악화되는 소년재범문제에 대처하는데 앞으로 선도유예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연 도 \ 구 분	소년범죄	선도유예	선도유예비율(%)
1996	146,986	11,062	7.5
1997	164,182	8,653	5.3
1998	161,277	9,182	5.7
1999	150,821	7,076	4.7
2000	151,176	7,045	4.7
2001	138,030	6,397	4.6
2002	123,921	6,479	5.2
2003	104,158	6,122	5.9
2004	92,976	4,977	5.4
2005	86,014	5,511	6.4

자료 : 청소년백서(재구성)

다음은 법원단계에서의 소년사건 처리현황이다. 그 중에서 <표 6>은 법원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접수현황이다. 현행 소년법에 의하면 법원소년부로 송치는 경찰, 검사, 형사법원 판사,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할 수 있다. 우선, <표 6>에서와 같이 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법원소년부에 접수된 사건도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검사송치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05년의 경우에 접수인원 24,353명 중에서 검사송치가 16,607명으로 69.2%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검사송치는 1996년의 48.8%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검사송치가 법원소년부의 가장 중요한 접수형태로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형사법원의 역송비율은 1996년에 29.3%를 차지하여 검사송치 다음으로 높았으나 이후로 현저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6.7%에 불과하다.

경찰송치의 경우는 1996년에 21.9%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에 들면서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4.9%의 수준이다. 경찰이 법원소년부에 송치해야 할 대상은 우범소년과 촉범소년이지만 대부분이 12-14세의 촉범소년이며 우범소년은 거의 송치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보호통계(2004)에 의하면 2003년에 우범소년이 송치된 경우는 없고, 2002년에 1명, 2001년에 2명, 그리고 2000년과 1999년에는 전무하였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통고는 임의규정이지만 경찰송치는 강행규정이다.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이 발견되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966년부터 '소년경찰직무요강'(내무부예규)에 의거해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량행위소년을 소년풍기사범으로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편에서는 범죄를 전제로 하지 않은 보호처분은 부당하다는 책임형법의 논리¹¹⁾와 경찰이 사소한 비행 을 저지른 모든 소년을 공식적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나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¹²⁾ 현실논리를 근거로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의 처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우범소년규정이야말로 소년법의 특징적 이념인 보호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고, 긴급히 보

11) 임상규, 전게서, p.244.

12) 오영근·최병각, 전게서, p.69.

호가 필요한 우범소년을 소년법의 대상으로 하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범소년을 적극적으로 법원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2007년의 개정시안은 비행초기 단계의 우범소년이 소년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범규정을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우범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우범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소년경찰의 법원소년부 송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범소년은 현행의 ‘소년경찰직무요강’에 의해서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년경찰직무요강’과 개정시안의 상이한 절차를 조율하여 소년경찰이 우범소년을 개정시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 소년보호사건 접수구분 현황

구분 연도	계	법관송치	검사송치	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장송치	타소년부 에서 이송	소년법제4조 제3항통고
1996	31,958 (100)	9,373 (29.3)	5,579 (48.8)	7,004 (21.9)	2 (0.0)	- (-)
1997	42,104 (100)	10,820 (25.7)	23,573 (56.0)	7,693 (18.3)	18 (0.0)	- (-)
1998	39,910 (100)	11,035 (27.7)	22,322 (55.9)	6,552 (16.4)	1 (0.0)	- (-)
1999	36,757 (100)	6,988 (19.0)	23,769 (64.7)	5,988 (16.3)	11 (0.0)	1 (0.0)
2000	36,520 (100)	6,190 (16.9)	24,449 (66.9)	5,863 (16.1)	18 (0.1)	- (-)
2001	30,706 (100)	3,923 (12.8)	22,013 (71.7)	4,741 (15.4)	28 (0.1)	1 (0.0)
2002	26,811 (100)	2,881 (10.7)	19,402 (72.4)	4,512 (16.8)	15 (0.1)	1 (0.0)
2003	24,222 (100)	2,045 (8.4)	17,667 (72.9)	4,474 (18.5)	14 (0.1)	22 (0.1)
2004	22,810 (100)	1,730 (7.6)	16,138 (70.7)	4,881 (21.4)	43 (0.2)	18 (0.1)
2005	24,353 (100)	1,637 (6.7)	16,607 (68.2)	6,060 (24.9)	42 (0.2)	7 (0.0)

자료 : 범죄백서(재구성)

13) 윤용규·최종식, 전제서, p.63-64.

<표 7>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소년부의 처리현황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법원소년부에 송치되면 90% 가량이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6년의 경우는 94.8%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87.0%가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보호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하면 집에 돌려보내 보호자의 감호를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제1호 처분, 제1·2호 병합처분, 제1·3호 병합처분이 보호처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보호처분들은 1996년에 83.4%, 1997년에는 84.5%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76.0%로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보호처분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에 반하여 소년범죄자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의 비율은 최근에 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이다. 1996년과 1997년에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한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 이러한 비율은 13.8%, 2003년에 11.2%, 2005년에 12.3% 등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¹⁴⁾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하는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는 거의 없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4호 처분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 내외에 불과하여 다른 처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소년원에 수용하는 6호 처분과 7호 처분은 1996년 이래로 실제 수용인원은 소년범죄의 발생건수가 줄면서 최근에 들어 감소하지만 전체 보호처분 중에서 8% 내외로 주목할만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소년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의 상태이므로 서로 다른 성장단계, 개인적 자질의 차이, 주위친구의 영향, 가정환경이나 거주환경의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개별화된 처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재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비록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지만 5호 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4호 처분은 2% 내외에만 처분됨으로써 소년범죄자를 이전의 가정이나 생활환경에 돌려보내는 제1호 처분, 제1·2호 병

14) 그동안 제1호 처분, 제1·2호 병합처분, 제1·3호 병합처분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심리적 부담감만 줄뿐 소년범죄자를 이전과 동일한 가정이나 환경에 다시 노출시키는 것으로 소년의 보호에 그 효과가 의문시되었다(이은한, 2007,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제언”, 소년법연구, p.165). 따라서 최근에 들어 이러한 처분의 비율이 줄어들고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법원소년부가 이전의 가정환경에 기반한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대신에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처분, 제1·3호 병합처분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소년원에 수용하는 수용처분으로 대별된 상태이다. 2007년의 개정시안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보호관찰에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구분하고, 대안교육 등을 보호관찰과 병합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1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처분을 신설하였다.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위한 개정시안의 노력은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처분은 대부분 개인중심적인 것으로 소년범죄자가 일상적 사회생활에 다시 원만하게 재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병영훈련(boot camp), 집단가정, 야외생활, 가족회합, 화해조정 등과 같이 소년범죄자의 사회재통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개발하고 운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검사는 소년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앞서 검사의 사건처리 현황에서 살펴봤듯이 최근에 들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감소하여 2005년의 경우에 전체 소년범죄자의 17.7%가 형사법원에 기소되었다. <표 8>은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제1심 재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판결은 법원소년부로 해당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법원소년부로 역송한 비율은 전체 소년형사사건의 50%를 상회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36.4%의 사건(2005년)이 법원소년부로 역송되고 있다. 역송사건들은 범죄가 심각한 내용이거나 보호처분이 부적합하여 형사법원으로 기소하였지만,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했을 때는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들이다. 범죄경력이 남게 되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판결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년법이 추구하는 보호주의 이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해당사건의 소년은 장기간에 걸쳐 형사법원과 법원소년부를 오가며 온갖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입장에서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심리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7>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연 도	합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 불개시	검사 송치	기 타
		계	1호	1·2호	1·3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996	32,697 (100)	30,992 (94.8)	27,271 (83.4)	-	-	12,241	9,599	604 (1.8)	82 (0.3)	1,881 (5.8)	1,154 (3.5)	647 (2.0)	953 (2.9)	53 (0.2)	52 (0.1)
1997	39,639 (100)	37,539 (94.8)	33,504 (84.5)	-	-	12,535	14,017	653 (1.7)	43 (0.1)	2,214 (5.6)	1,145 (2.9)	650 (1.6)	1,304 (3.3)	59 (0.1)	67 (0.2)
1998	39,300 (100)	37,081 (94.3)	33,139 (84.3)	-	-	12,719	13,712	851 (2.2)	10 (0.0)	1,884 (4.8)	1,197 (3.0)	897 (2.3)	1,250 (3.2)	26 (0.1)	46 (0.1)
1999	36,460 (100)	32,348 (88.7)	28,599 (78.4)	-	-	10,677	11,234	920 (2.5)	14 (0.0)	1,621 (4.4)	1,194 (3.3)	1,848 (5.1)	2,118 (5.8)	106 (0.3)	40 (0.1)
2000	35,342 (100)	32,270 (91.3)	28,572 (80.8)	-	-	10,783	10,404	896 (2.5)	10 (0.0)	1,502 (4.2)	1,290 (3.7)	1,322 (3.7)	1,512 (4.3)	93 (0.3)	145 (0.4)
2001	30,496 (100)	27,314 (89.6)	6,057 (19.9)	8,816 (28.9)	8,975 (29.4)	2 (0.0)	6 (0.0)	717 (2.4)	7 (0.0)	1,420 (4.7)	1,314 (4.3)	1,255 (4.1)	1,798 (5.9)	97 (0.3)	32 (0.1)
2002	26,677 (100)	24,048 (90.1)	4,487 (16.8)	7,869 (29.5)	8,325 (31.2)	4 (0.0)	9 (0.0)	879 (3.3)	5 (0.0)	1,322 (5.0)	1,148 (4.3)	1,268 (4.8)	1,120 (4.2)	202 (0.8)	39 (0.1)
2003	26,484 (100)	22,569 (85.2)	4,806 (18.1)	7,383 (27.9)	7,646 (28.9)	5 (0.0)	6 (0.0)	534 (2.0)	-	1,177 (4.4)	1,012 (3.8)	1,224 (4.6)	2,448 (9.2)	208 (0.8)	35 (0.1)
2004	22,678 (100)	19,958 (88.0)	3,353 (14.8)	6,634 (29.3)	7,322 (32.3)	8 (0.0)	7 (0.0)	547 (2.4)	-	1,027 (4.5)	1,060 (4.7)	1,106 (4.9)	1,431 (6.3)	115 (0.5)	68 (0.3)
2005	24,303 (100)	21,135 (87.0)	4,166 (17.1)	6,897 (28.4)	7,470 (30.7)	9 (0.0)	9 (0.0)	577 (2.4)	5 (0.0)	1,053 (4.3)	949 (3.9)	1,228 (5.1)	1,758 (7.2)	129 (0.5)	53 (0.2)

자료 : 사법연감(재구성)

주: 2000년까지 2호와 3호 처분은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을 포함

집행유예는 소년부 송치 다음으로 높은 형사법원의 판결이다. 집행유예의 비율은 2005년을 제외하고 최근에 들수록 증가추세이다. 구체적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집행유예율은 21.5%와 25.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33.8%, 2004년에 34.4%, 2005년에 28.5% 등으로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사건의 90% 가량이 법원소년부로부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형사사건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요구된다고 분류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이 소년보호사건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소년형사사건에서 30% 가량 아무런 처벌이나 처우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 되는 현상은 현행소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1심 재판결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은 실형이다. 정기형과 부정기형을 포함한 실형 선고율은 1996년에 15.8%에서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03년에 23.5%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2005년의 실형

선고율은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의 15.7%이다. 따라서 소년형사사건에서 실형 선고율은 20%내외이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소년범죄가 안정화되고 비폭력화됨에 따라 실형 선고율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연 도	합 계	사 형	무기형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 금	선고 유예	무 죄	소년부 송치	기 타
1996	15,926 (100)	- (-)	7 (0.0)	185 (1.2)	2,320 (14.6)	3,427 (21.5)	524 (3.3)	61 (0.4)	97 (0.6)	8,429 (52.9)	876 (5.5)
1997	19,752 (100)	- (-)	2 (0.0)	201 (1.0)	2,649 (13.4)	4,957 (25.1)	661 (3.3)	50 (0.3)	34 (0.2)	10,103 (51.1)	1,095 (5.5)
1998	21,388 (100)	- (-)	3 (0.0)	291 (1.4)	2,483 (11.6)	4,900 (22.9)	613 (2.9)	50 (0.2)	17 (0.1)	10,806 (50.5)	2,225 (10.4)
1999	15,739 (100)	- (-)	3 (0.0)	190 (1.2)	2,637 (16.8)	4,451 (28.3)	495 (3.1)	33 (0.2)	11 (0.1)	6,270 (39.8)	1,649 (10.5)
2000	17,446 (100)	3 (0.0)	16 (0.1)	1,514 (8.7)	2,209 (12.7)	5,391 (30.9)	1,369 (7.8)	159 (0.9)	69 (0.4)	5,545 (31.8)	1,171 (6.7)
2001	9,483 (100)	- (-)	- (-)	70 (0.7)	2,039 (21.5)	2,875 (30.3)	564 (5.9)	61 (0.6)	10 (0.1)	3,375 (35.6)	489 (5.2)
2002	8,305 (100)	- (-)	1 (0.0)	73 (0.9)	1,876 (22.6)	2,549 (30.7)	631 (7.6)	44 (0.5)	10 (0.1)	2,755 (33.1)	366 (4.4)
2003	5,961 (100)	- (-)	- (-)	26 (0.4)	1,266 (21.2)	2,014 (33.8)	472 (7.9)	39 (0.7)	10 (0.2)	1,886 (31.6)	248 (4.2)
2004	5,212 (100)	- (-)	1 (0.0)	25 (0.5)	956 (18.3)	1,795 (34.4)	503 (9.7)	53 (1.0)	15 (0.3)	1,492 (28.6)	372 (7.1)
2005	4,236 (100)	- (-)	- (-)	18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자료 : 사법연감(재구성)

이외에 주목할만한 사항은 최근에 들어 벌금형의 선고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벌금의 선고율은 1996년에는 3.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소년형사사건의 9.7%, 2005년에는 9.8% 등으로 199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벌금형의 증가는 최근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나 폭력범죄가 줄어들고 절도나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에 소년 자신은 아직까지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자가 대납할 것이다. 벌금의 형벌효과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소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처벌이나 처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율이 늘고 있지만 소년 본인에 대해서 처벌효과나 처우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앞

으로 그 활용에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최근의 소년범죄 대응전략

재범예방에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과제이다. 다른 산업국가들에서도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소년범죄의 발생규모와 폭력화 경향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소년들이 만성적 상습범죄자로 발전하는 양상이 심화하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소년범죄의 상습화에 대처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는 2002년에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Act)을 재인증하면서 만성범죄소년 1명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170만-230만 달러로 추정하고 이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조했으며, 영국에서도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만성범죄소년(persistent offenders)에 대한 재범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¹⁵⁾ 다음에서는 외국에서 효율적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하는 균형사법이념, 결합판결, 회복적사법, 전환처우 등의 소년범죄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1. 균형사법이념(balanced justice)

1899년에 미국 일리노이에서 소년재판소법이 제정된 것이 소년사법체계에 있어 제1의 혁명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균형사법이념은¹⁶⁾ 제2의 혁명이라 할 정도로 소년사법체계의 혁신적 이념이다. 균형사법이념은 소년사법체계가 추구하는 목표 자체를 새

15) U.S.C. 5601,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2002; Bottoms, Anthony and James Dignan, 2004, Youth Justice in Great Britain, In Michael Tonry and Anthony N. Doob(eds.),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p.25-42.

16) 균형사법이념은 흔히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BARJ)와 같이 균형잡힌 접근 계획이라는 이념적 측면과 회복적 사법철학에 바탕을 둔 처우적 측면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로이 설정한다. 일리노이 주에서 소년재판소법이 제정된 이후 100여년간 소년사법체계가 추구했던 목표는 소년의 보호(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라는 단일 목표이었다. 즉 소년이란 아직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소년의 범죄행위는 잘못된 사회화의 산물이고 또한 쉽게 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버지와 같은 후견인적 입장에서 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친사상(parens patriae) 혹은 소년보호주의에 의해 소년사건에 있어서는 행위보다는 행위자의 특성이, 처벌보다는 재활이 소년범죄자를 처리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타이릴 때에 특별한 절차나 증거가 필요 없듯이 소년법원의 절차는 비형식적이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며, 전문증거도 증거로 인정되었고, 유죄의 판정도 형사법원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증거우월의 법칙(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적용되었다. 물론 이후 1960년대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비형식적이었던 소년사법절차가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지만 소년사법체계가 추구하는 목표는 변함없이 소의 보호라는 단일 목표였다.¹⁷⁾

소년은 미성숙의 상태이고, 소년범죄에는 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가 환경을 조정하여 이들을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년보호주의의 규범적 당위성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부모훈육의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소년에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회구성원이나 피해자의 곤궁을 외면한 채 해당소년의 건전육성만을 옹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규범적 당위성과 이의 실현불가능성은 그간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였으며 효율적인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대해 균형사법이념¹⁸⁾은 ‘사회의 보호(community protection)’, ‘피

17) Bilchik, Shay, 1999, Juvenile Justice: A Century of Chang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Justice Bulletin.

18) 영국의 경우는 소년사법체계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1) 범죄예방이나 재범방지의 우선성 2)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이나 변상(reparation) 3) 효율적 소년사건의 처리(efficiency), 4) 소년이나 소년보호자의 책임성 강화(responsibilization)를 설정함으로써

해자와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individual accountability to victims and the community)', '소년의 능력(offender competency)'¹⁹⁾을 소년사범체계가 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한다.²⁰⁾ '사회의 보호'란 사회구성원들에 안전하고 위협없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소년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며, '소년의 능력'이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앞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성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세 가지 목표 중에서 균형사범이념은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사범기관은 사회를 보호하고, 소년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목표 모두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사범이념이 강조하는 또 다른 사항은 소년, 피해자, 지역사회 각각이 소년사범체계로부터 실질적 이익(tangible benefits)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²¹⁾

2. 결합판결(blended sentencing)

전통적으로 소년사건은 소년법원이 심판하여 보호처분(disposition)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 형사처벌(punishment)을 부과하도록 하여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판결내용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소년부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며, 형사법원은 정기형이나 부정기형 그리고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소년법원에서는 담당판사가 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처우를 심층적으로 판별하기 위

써 비록 균형사범이념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회의 보호,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소년의 책임, 소년의 능력배양 등을 강조하고 있다(Bottoms, Anthony and James Dignan, 전제서, p.41-42).

19) 소년의 능력(offender competency)은 전통적 소년법이 추구했던 소년보호주의와 같은 의미로, 실제 미국의 소년법들에서는 처우(treatment), 재활(rehabilitation), 보호(care), 지도(guidance), 지원(assistance) 등의 용어로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20) Guarino-Ghezzi, Susan & Edward J. Loughran, 2004, *Balancing Juvenile Justi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p.173-177.

21) Torbet, Patrica & Douglas Thomas, 1997,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Implementing the Philosophy*, Pennsylvania Progress, Vol.4(3), p.2.

해 비형식적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판결내용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구분으로 인하여 형사법원에 송치된 소년들이 소년법원에 비해 오히려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면, 역송사건에서와 같이 해당소년은 형사법원과 소년법원을 오가며 온갖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법원에서도 동일사건을 중복심리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나 과거 범죄경력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거나 소년 각자에 적합한 개별화된 제재와 처우를 부과하는 단계별제재(graduated sanction)를 활용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엄격한 구분을 폐지하고 소년법원에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형사법원에서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판결(blended sentenc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소년결합판결(juvenile blended sentencing)이란 소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형태이며, 형사결합판결(criminal blended sentencing)은 형사법원에서 보호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결합판결을 통하여 양형권한을 확대하고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처분과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소년결합판결의 형식에는 포섭적 결합판결(inclusive blended sentence)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는 법원판사가 보호처분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앞서 집행되며 보호처분 기간 중에 소년범죄자가 성실히 보호처분의 조건을 이행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집행되지 않는다. 포섭적 결합판결에서 형사처벌은 비행소년의 재범방지와 보호처분의 성신행을 촉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에 배타적 결합판결(exclusive blended sentence)은 보호처분과 집행유예부 형사처벌을 동시에 부과하지 않고, 소년법원판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직접 부과하는 형태이다.

형사결합판결은 형사법원으로 송치되었지만 심리결과 재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죄자에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형사결합판결도 포섭적 방식과 배타적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중에서 배타적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판결한다. 배타적 방식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는데 미국의 웨스

트버지니아 주에서는 형사법원으로 송치된 소년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내용에 관계없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에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소년범죄자에게 형사법원판사는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적합도청문회(fitness hearing)를 실시한 후에 형사법원판사가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섭적 방식으로 형사결합판결을 운영하는 경우에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형사법원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내용과 기능은 포섭적 소년결합판결과 유사하다. 형사법원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동시에 부과하지만 만일 해당소년이 보호처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범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3. 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

회복적사법은 최근 소년범죄 대응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이다. 현재 회복적사법프로그램은 미국에서 300개 이상, 유럽국가에서 7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²²⁾ 회복적사법이란 개념은 원래 Eglash²³⁾(1977)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대치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소년범죄자 대처방안이다.

회복적사법은 ‘범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회동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와 앞으로의 일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²⁴⁾을 통해 소년의 건전육성과 피해자

22) 강경래, 2007,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 소년법연구 제2호, p.282.

23) Eglash, A., 1977, “Beyond restitution: Creative restitution”, In Joe Hudson & Burt Galaway, Restitution in Criminal Justice, Lexington, Mass: Heath.

24) Marshall, Tony, 1996, “The evolu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4, p.21-43. Marshall의 정의는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이며, 반면에 Bazemore와 Walgrave는 결과를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정의한다. Bazemore와 Walgrave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우선시하는(gives priority to repairing the harm that has been caused by that crime, Bazemore & Walgrave, 1999, “Resorative Justice: In search of fundamentals and an outline for systemic reform”, In Restorative Justice: Repairing the Harm of Youth Crime, Gordon Bazemore & Lode Walgrave(eds), Monsey, NY: Criminal Justice, p.48) 처우

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회복적사법은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화해,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²⁵⁾ 첫째, 회복적사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사법에서 피해자로 가정하는 당사자는 피해자, 지역사회, 소년범죄자 자신 등이다. 피해의 내용으로는 신체적이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를 포함한다. 회복적사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의 회복을 소년범죄자의 대치과정에서 주된 목표로 설정한다. 둘째, 회복적사법은 관련당사자들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한다. 범죄피해의 회복은 소년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 등의 관련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솔직한 대화(story-telling)를 통하여 어떻게 피해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화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직접참여와 관련하여 회복적사법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중요시한다. 첫 번째 원칙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 절차를 제외하고 정형성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회복적사법은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범죄현상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주요 영향요인이므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책임을 공유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적사법의 종류로는 크게 회합모형과 조정모형이 있다. 회합모형은 범죄피해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통해 소년범죄자의 재통합과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형태이다. 회합에는 소년범죄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다. 회합은 과정진행자(facilitator)에 의해 진행된다. 과정진행자는 회합진행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회합개최를 당사자들에 통보한다든지, 회합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회합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것을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과정진행자의 신분은 경찰관, 학교관계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민간전문가 등 실시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회합이 개최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곤경이나 심정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해소년은 회합에 참여하여 주위

방법을 회복적 사법으로 정의한다.

25) 이호중, 2004,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p.22-24.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으로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갖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약속하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회합에서 합의되는 배상에는 물질적 배상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같은 상징적 배상²⁶⁾을 포함하기도 한다. 조정모형은 조정자(mediator)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조정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형태이다. 조정모형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조정자로 구성되며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조정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오가며 대화를 조율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조정과정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조정자가 참여하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럿일 때는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하기도 하며 소년의 부모가 조정을 참관하는 경우도 있다. 조정자의 역할은 중재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를 적절히 조절하여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합의를 강제하지 않는다. 조정모형에서는 중재(arbitration)와 달리 최종합의나 결과물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서 명날인된 피해배상 합의문이 만들어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년범죄자와 피해자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조정모형의 절차는 흔히 세 단계로 진행된다.²⁷⁾ 첫단계는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단계로서 범죄사건의 발생사실, 피해, 당사자의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합의한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조정모형의 핵심이며 통상 문서로 작성된다. 세 번째 단계는 장래에 합의사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구체적인 배상계획이라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담일정 등이 논의된다.

4. 전환처우(diversion)

전환처우는 균형사범이념, 결합판결, 회복적사범 등과 비교하여 소년범

26) 상징적 배상(symbolic reparation)은 특히 피해자가 구체적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같이 추상적 집합체인 경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7)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범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2.

죄자에 대한 대책으로 활용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선도유예율이 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환처우²⁸⁾는 소년범죄자를 사법절차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키고 대안적 처우를 활용하는 소년범죄대책이다.

외국에서 전환처우를 실시했을 때에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에 대체로 효과적이었다. Umbreit 등²⁹⁾은 전환처우한 소년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소년들의 1년후 재범률을 비교하였는데 전환처우된 소년의 재범률은 15.4%에 불과했으나 그렇지 않은 소년의 재범률은 21.6%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죄자도 전환처우된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소년들은 훨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어 전환처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McCold와 Wachte, Luke와 Lind 등도 전환처우는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에 유효한 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³⁰⁾

전환처우의 효과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소극적 측면에서 전환처우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소년범죄자는 수사과정, 법원의 판결과정, 교정시설의 수용과정에서 여러 부정적 경험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사회로 되돌아 왔을 때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온갖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전환처우는 소년범죄자를 조기에 사법절차로부터 이

28) diversion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달리 번역되었다. 분리(심영희), 전환처리(권태호), 대체처분(홍석조, 정동기), 다이버전(이기현, 신동운)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흔히 소년범죄자를 공식사법절차로부터 전환시켜 비공식 처우활동에 위탁하는 노력이라는("efforts to utilize alternatives to initial or continued processing into the justice system",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1973) 의미에서 흔히 전환처우로 번역된다. <형사사법의 표준과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회의(NAC-CJSG)>의 정의는 소년범죄자를 공식절차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흔히 개입형 다이버전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하여 단순 다이버전이란 아무런 조건없이 대상자를 공식절차로부터 완전히 이탈시키는 형태이다. Cressy와 McDermott 등은 단순 다이버전을 진정한 형태의 다이버전이라고 주장하였다(오영근·최병각, 전게서, p.14). 그러나 단순 다이버전은 소년범죄자를 사회에 방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NAC-CJSG의 정의를 다이버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29) Umbreit, M.S., W. Bradshaw, & R. Coates, 1999, "Victims of severe violence. Meet the Offender: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6, p.321-344.

30) McCord, P. & T. Wachtel, 1998, Restorative Policing Experiment, Pipers-ville, PA: Community Service Foundation.

탈시킴으로써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 측면에서 전환처우는 비공식적 사회내처우를 활용하므로 소년범죄자에 내실화된 선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우선 전환처우를 통해서는 소년범죄자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선도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처우는 관료제적 규칙으로 인하여 처우방법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유연하지 못하므로 소년범죄자에 개별화된 처우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반해 비공식 사회내처우는 관료제적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소년범죄자에 내재하는 문제의 해결에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처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년범죄자나 그 보호자는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많은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환처우는 조기에 사건을 이탈시키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체계도 전환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전환처우의 활성화로 다수의 소년범죄자가 사법절차로부터 이탈되면 그만큼 처리해야 할 소년범죄자 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범죄성향이 보다 심각한 소년들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내실화된 처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범죄와 소년사건처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최근 소년사법의 동향을 검토하여 소년사법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소년범죄의 현황을 요약하면 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는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범죄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율도 줄어드는 경향이다. 범죄의 질적 성격에서도 폭력범죄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에 절도와 사기와 같은 비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소년의 재범현상은 악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1990년 초기에 재범 이상의 비율은 20%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로는 3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에 들어 재범현상이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범 이상을 전과회수로 세분화했을 때에 4범 이상의 비율이 불과 10년 만에 3배 이

상이나 증가했을 정도로 소년범죄의 상습화도 심화되는 추세이다.

소년사건 처리현황의 분석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검사의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다. 전체 소년범죄자의 63% 가량이 법원소년부나 형사법원에 송치되지 않는다. 이들 중에서 한정범죄소년의 경우는 불기소가 적합한 조치이겠지만, 생애지속 범죄소년은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이므로 불기소 대상자를 판별하는데 세심한 주의와 과학적 진단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전환처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전환처우는 외국에서 소년범죄자의 재범예방에 유효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유예되는 비율이 6%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의 소년에게만 실시되고 있다. 셋째, 우범소년의 문제이다. 우범소년은 장차 소년범죄자로 이행할 것이 우려되는 대상이다. 소년범죄자로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2명 내지는 전무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보호처분의 다양성이 미흡하다. 보호처분은 비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었지만 실제 5호 처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4호 처분은 2% 내외에 불과될 뿐이다. 그리고 제1호 처분, 제1·2호 병합처분, 제1·3호 병합처분과 같이 범죄 이전의 가정과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대부분이고 8% 내외만이 소년원의 수용처분을 받고 있다. 보호처분의 유형도 대부분이 심리성향의 개선을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이었으며 병영훈련, 집단가정, 야외생활, 가족회합, 화해조정 등과 같이 소년범죄자의 사회재통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형사법원의 역송비율이 높다. 35% 내외의 소년형사사건이 법원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정도로 역송비율이 높다. 역송의 경우는 종국결정의 지연으로 소년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소송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였다. 여섯째,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았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되는 비율은 최근에 30% 가량을 차지한다. 소년형사사건은 보호사건에 비해 사법기관의 개입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집행유예된 소년은 특정한 목적의 처벌이나 처우를 받지 않음으로써 소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벌금형의 증가추세이다. 벌금형은 최근에 증가하여 소년형사사건의 10% 가량에 선고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소년의

경우에 벌금의 형벌효과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막상 자신은 처벌이나 처우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벌은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소년법 개정시안은 현행의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시안은 새로운 제도적 형태를 도입하는 부분에 치중함으로써 높은 불기소율, 전환처우의 낮은 활용도, 우범소년의 낮은 송치율, 형사법원의 높은 역송율과 집행유예율, 벌금형의 문제 등과 같이 소년사법체계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개정시안의 보완과정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형태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새로운 소년범죄 대응전략으로 대두하는 균형사법이념, 결합판결, 회복적사법에 관해서도 그 도입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래, 2007, “회복적 사법과 소년사법”, 소년법연구 제2호.
- 김은경, 2004,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 2003,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2004, 형사정책 제7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호과, 2007, 소년법 개정계획.
- 오영근·최병각, 1995,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원혜욱, 1999,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형사정책 제11호.
- 윤용규·최종식, 2000,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 이순래, 2002, “소년전환처우(Juvenile Diversion)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법연구 창간호,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 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 이순래·박철현, 2000,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안행정학회
보 제9호.
- 이호중, 2004,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형사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 임상규, 2002,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7권.
- 전지연, 2004, “경찰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한국형사정책학회
와 청소년단체협의회 세미나 원고.
- Bilchik, Shay, 1999, 「Juvenile Justice: A Century of Chang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Juvenile Justice Bulletin.
- Eglash, A., 1977, “Beyond restitution: Creative restitution”, In Joe
Hudson & Burt Galaway, Restitution in Criminal Justice,
Lexington, Mass: Heath.
- Guarino-Ghezzi, Susan & Edward J. Loughran, 2004, 「Balancing
Juvenile Justi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Kenji, Hirose, 2007, “일본의 소년법제-비형벌적 처분을 중심으로”, 대한
범죄학회 국제세미나 자료집.
- McCord, P. & Wachtel, T., 1998, 「Restorative Policing Experiment」,
Pipersville, PA: Community Service Foundation.
- Moffitt, T.E., 1993,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 Torbet, Patrica & Douglas Thomas, 1997,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Implementing the Philosophy”, Pennsylvania Progress,
Vol.4(3).
- Ulmer, Jeffery T., 2007, “Juvenile offenders in the U.S.: Transfer to
adult court versus diversion ou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대한범죄학회 국제세미나 자료집.
- Umbreit, M.S., W. Bradshaw & R. Coates, 1999, “Victims of severe
violence. Meet the Offender: Restorative Justice through
dialogu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6.

Features of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and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the juvenile crime

Lee, Soon-Rae*

Features of juvenile crime and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are examined and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problems in the current treatments of juvenile offenders are provided in this study. Official statistics show that juvenile crimes tend to stabilize. Fewer incidenc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and juvenile crime rates have gradually decreased from 1996 to 2005. Juvenile offenses tend to become nonviolent in recent years. However, reoffending rates are seen to increase in recent years. About 40 percent of all juvenile offenses are committed by reoffending youths in 2005. In addition, reoffending youths are more likely to be persistent offenders.

Findings from the statistics of juvenile justice system show several inadequacies. First, non-referral rates of prosecutors are too high. About 63 percent of juvenile offenders are referred to neither juvenile courts nor adult courts. Second, diversion are rarely utilized. Only 6 percent of juvenile offenders are treated by diversion programs. Third, juveniles of status offenses are almost entirely neglected. None or 1-2 status offenders are referred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ourth, the kinds of dispositions are too limited in juvenile courts. About 80 percent of juvenile offenders have received the home-based dispositions and about 8 percent of them have received the disposition of residential training school. Fifth, the percent of transferred cases are too high. About 35 percent of juvenile offenders have been transferred from adult courts to juvenile courts. Sixth, the percent of suspended sentences are too high. About 30 percent of juveniles have received

* Professor, College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Ph.D. in Criminology

the suspended sentences by adult courts. Finally, fines are too often sentenced by adult courts. About 10 percent of juvenile offenders, who are unable to pay the fines without the support of parents, are sentenced by fines in adult courts.

Remedies are provided to deal with the inadequacies found in this study. Juvenile justice policies such as balanced justice, blended sentencing, and restorative justice are suggested to be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of more efficient juvenile justice system.

주제어 : 소년범죄, 소년사법체계, 균형사법, 결합판결, 회복적사법

Keywords : Juvenile Crime, Juvenile Justice System, Balanced Justice, Blended Sentencing, Restorative Justice